

사.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(영 제19조의3)

구분	내용
표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표시기간은 3년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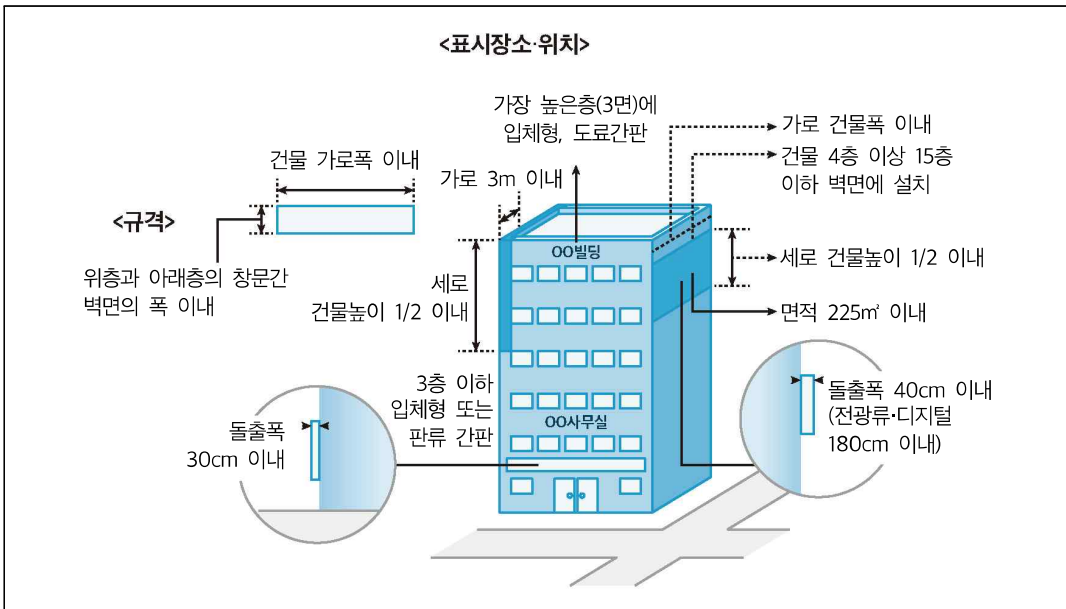
아.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(영 제20조)

구분	내용
표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간판(영 제3조제6호의2)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 ※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밖과 인도·도로 등에 설치금지 시행령(영 제3장)에서 규정되지 않은 벽면 이용 간판·돌출간판·공연간판·입간판·현수막·애드벌룬·벽보·전단·선전탑·아치광고물·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·도 조례로 정함

4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(시·도 조례표준안)

※ 영 제20조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위임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

가.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(시·도 조례표준안 제8조)



구 분	내 용	
정 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자·도형 등을 목재·아크릴·금속재·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·설치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벽면, 유리벽의 바깥쪽,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• 문자·도형 등을 도료, 색상이 표시된 천·종이·비닐·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벽면, 유리벽의 바깥쪽,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·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•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·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	
허가 신고 사항	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•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간판(타사광고)
	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면적이 5㎡ 이상인 간판 •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(자사광고) ※ 네온류·전광류·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임
	신고 배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이 5㎡ 미만인 간판 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·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·정유사 등의 명칭표시와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•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·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•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※ 네온류·전광류·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임
표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년 이내 	
표시규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•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(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·군·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예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유소·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옆면 및 현수식 간판과 세로로 길게 표시(가로는 3m 이내, 세로는 건물 높이의 1/2 이내)하는 간판, -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(면적은 225㎡ 이내,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1/2 이내)하는 간판 ※ 창문, 환기구 등에 설치 불가 </div>	
표시수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 가능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<예외: 간판의 추가표시가 가능한 경우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.2㎡ 이하의 간판 ② 건물 최상단에 입체형·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③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(타사광고 등) ④ 주유소·가스충전소의 상호·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하는 간판과 주유소·가스충전소의 상호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간판(1면의 면적 3.5㎡ 이하, 두께 30cm 이하) ⑤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4㎡이하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 </div>	

구 분	내 용
	<p>물인 간판</p> <p>⑥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</p> <p>⑦ 물가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</p> <p>⑧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라 문자·도형 등을 도로, 색상이 표시된 천·종이·비닐·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·시설물·점포·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. 다만,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</p>
표시방법	<p>①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,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cm 이내</p> <p><예외: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완화규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40cm 이내(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cm 이내) -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cm 이내로 표시 가능 <p>② 건물의 5층 이하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 가능</p> <p>③ 공동주택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공장 등(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 1)의 경우,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명칭은 세로 2.4미터 이내,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2. 보조명칭은 세로 2.0미터 이내,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3. 도로·천·종이·비닐·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4.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함 5.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·군·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<p>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물의 가장 높은 층(옥상난간 포함)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·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로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은 가로는 3m 이내, 세로는 건물 높이의 1/2 이내로 표시 2. 위 ②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, 면적은 225㎡ 이내,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1/2 이내(가로는 건물의 가로폭 이내) •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(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)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음 <p>⑤ 주유소·가스충전소의 상호·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, 주유소·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1면의 면적이 3.5㎡ 이하이고 두께가 30cm 이하인 간판을 표시할 수 있음</p> <p>⑥ 벽면 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p>

구 분	내 용
	<p>⑥ 벽면 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(위 ④의 2)에 표시하는 간판(타사광고) 2.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※ 이 경우 4㎡ 이하로 한정하며,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, 정지화면으로 표시(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 금지) <p>⑦ 수소연료공급시설·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,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의 간판 규격은 1면의 면적 3.5㎡ 이하이고 두께가 30cm 이하로 표시</p> <p>⑧ 위 ⑦의 수소연료공급시설·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·도지사가 시·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 표시 가능</p>

※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(시·도 조례표준안 제8조의2)

구 분	내 용
허가·신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가
표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년 이내
표시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은 디지털광고물의 적용·표시대상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※ 시·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·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음 •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(영상표시장치등)의 설치방법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음 ※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·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가능 ②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 확보 ③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,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